

법률사무소 가인

변호사 정재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38, 701호 (역삼동, 태영빌딩)

전화 : 02-564-0702~3

팩스 : 02-564-0713

2018. 7. 9.

자문의뢰번호 : 2018-88

수 신 : 서울주택도시공사

참 조 : 조 재 윤 사원님(주거복지기획부)

제 목 : 수의계약 시 제안서 평가 관련

위 제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귀공사가 공고한 위탁용역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칭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를 통하여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8. 5. 29. 제안서 평가를 통해 A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결격으로 입찰이 무효화 되었고, 이후 재공고에서 역시 A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인

변호사 정재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38, 701호 (역삼동, 태영빌딩)

전화 : 02-564-0702~3

팩스 : 02-564-0713

이와 관련하여 귀공사는 A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시, 별도의 제안서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입찰시의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질의서 상 질의사항 나. 부분은 위 질의에 포함되는 취지로 보이는 바, 별도로 구분하지는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1. 관련 법 규정의 검토

(1) 본건 사업 입찰은 용역에 대한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수의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칭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 제4항 제3호, 제132조 제2항 제2호 및 제

법률사무소 가인

변호사 정재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38, 701호 (역삼동, 태영빌딩)

전화 : 02-564-0702~3

팩스 : 02-564-0713

134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를 때, 재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시 특정 공사 입찰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입찰에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1) 본 사안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 전 제안서 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이나, 반대로 제안서 평가를 생략할지라도 본 사안에 있어서는 이 또한 지방계약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즉,

(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정 공사 계약에 한정하여 심의 평가를 법제화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입찰에서 반드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는 제안서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라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입찰을 전제로 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iii) 본 사안은 일반적인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과 달리, 이미 제안서 심사까지 이루어진 후, 입찰이 무효가 되어 유찰된 경우인 바, 제안서 평가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존 제안서 평가를

법률사무소 가인

변호사 정재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38, 701호 (역삼동, 태영빌딩)

전화 : 02-564-0702~3

팩스 : 02-564-0713

원용하는 것이 직접적 규정이 없는 지방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iv) 본 사안에 있어 기존 제안서 평가가 변경될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귀공사의 설명에 따를 때 기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 자체의 계획 등을 담고 있어 동일한 사업을 진행함에 변경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입찰 회사의 재정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가 아닌 귀공사 자체적으로 심사하는데, 전년도인 2017년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평가되는 바, 제안서가 제출된 2018. 5. 29.과 현 시점의 1달여간의 기간 차이로 사정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v)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제안서 평가가 1달 여 전 이루어진 상태에서 명문의 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다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업무 진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기존 평가에 기초하여 별도의 제안서 평가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지라도 적법한 계약 절차 진행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사무소 가인

변호사 정재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38, 701호 (역삼동, 태영빌딩)

전화 : 02-564-0702~3

팩스 : 02-564-0713

이상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의문이나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정재원

